

수 원 지 방 법 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94973 부동산강제경매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3. 19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정석훈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4. 10. 25. 강제경매개시결정		배당요구종기	2025. 1. 13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외국인등록(체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
배지환	611호	등기사항전부증명서	주거 임차권자	2021.02.26.~	143,500,000		2021.02.26.	2021.02.26.(140,000,000원), 2023.01.18.(증액된 3,500,000원)	
<비고> 배지환: 경매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권자(배지환)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임(대항력및우선변제권 승계). 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4번 임차권등기 있음.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.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
비고란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94973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679-8

브리즈힐오피스텔 1동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9길 9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7층 업무시설(오피스텔, 제1종근린생활
시설(소매점))

지하1층 1,000.39m²

지하2층 995.09m²

지하3층 989.73m²

지하4층 1,018.31m²

1층 674.94m²

2층 660.05m²

3층 660.05m²

4층 660.05m²

5층 660.05m²

6층 660.05m²

7층 660.05m²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6층611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21.48m²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679-8

대 1166.6m²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1,166.6분의 7.95

감정평가액

142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6.01.19

142,000,000

14,200,000

2회

2026.02.25

99,400,000

9,940,000

3회

2026.03.31

69,580,000

6,958,000

4회

2026.05.01

48,706,000

4,870,600